

❖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

과 장 강검윤 (044-202-7570)

사무관 김민규 (044-202-7575)

☞ 보도일시: 2020. 11. 13.(금) 조간,
<인터넷 2020. 11. 12.(목) 13:30 이후>
☞ 총 9쪽 (붙임 8쪽 포함)

❖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

과 장 김배성 (044-201-3993)

서기관 이병민 (044-201-3994)

❖ 공정거래위원회서비스업감시과

과 장 김성근(044-200-4499)

사무관 김경원(044-200-4508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「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」 발표

□ 정부는 11.12.(목) 「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.

*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 브리핑 말씀자료

【별첨】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사무관(☎044-202-7575), 국토
교통부 물류정책과 이병민 서기관(☎044-201-3994)에게 연락주시기
바랍니다.

1

인사말 및 추진배경

① 인사말

- ☐ 안녕하십니까?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.
- ☐ 「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② 추진배경

- ☐ 추진배경입니다.
- ☐ '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,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,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.
- ☐ 하지만,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
 -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.
 - 이는 제도·인프라·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,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·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.
- ☐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,
 -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.

- 아울러,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,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.
-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.
 -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,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.
 -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,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

2 긴급 실태점검

-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(sub)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*을 실시하고 있고,
 - * 대상 : 주요 택배사(CJ, 로젠, 한진, 롯데) SUB터미널 45개소, SUB 터미널과 계약된 대리점 423개소
 - 기간 : '20.10.21.~11.13. (약 3주, 필요 시 연장)
- 작업시간, 물량 등 업무 여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3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

① 장시간·고강도 작업시간 개선

[적정 작업시간 관리]

- 택배기사의 장시간·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,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

-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,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,
-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,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.
-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,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.

【분류작업 개선】

- 특히,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·세분화하고,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【택배사 책임 강화】

-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,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.
- 또한,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② 건강보호 강화

【건강진단 및 사후관리】

-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-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【고위험군 관리】

- 혈압,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,
-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【직무스트레스 관리】

-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이행을 지도하겠습니다.

4 사회안전망 강화

【산재보험】

-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,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‘적용제외 취소’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-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,
-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·부상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【고용보험】

-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,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*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(정부안) 국회 제출('20.9.11.)

- 아울러,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- 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.
- ☐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, 과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.

【불공정 관행 개선】

- ☐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, 택배기업, 대리점,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,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.
 -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**홈쇼핑 등 대형화주**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, **필요한 부분은 개선**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☐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**위약금**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**표준계약서**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【표준계약서 보급 확대】

- ☐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**적정 작업체계를** 구축하고, 당사자 간의 **공정한 계약**을 유도하기 위해
 -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(사업자-대리점, 대리점-종사자)를 마련하도록 하고, 표준계약서가 **택배 현장 곳곳**에 정착될 수 있도록 **관련 제도***를 개선하겠습니다.
- *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택배사업자 인정(등록) 요건으로 반영

【특별제보기간 운영】

- ☐ 아울러,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**특별제보기간**을 운영하겠습니다.

-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추후 제도개선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6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

【택배가격 구조 개선】

-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,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.
-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,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

【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】

-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'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.
-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용자,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*하도록 하겠습니다.

* 2%p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용자 5천억원 제공, 물류펀드 조성·지원 등

【법·제도적 지원근거 마련】

-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.
- 정부는 국회 및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,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, 조기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.

7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 구성·운영

- ☐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, 택배가격 구조 개선,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.
- 해당 논의기구에는 사업자·종사자·소비자, 대형 화주, 국회, 정부,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며, 구체적인 구성·운영 방안은 노조, 업계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8 마무리

- ☐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
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.
- ☐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
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
- ☐ 감사합니다.